

연구출판윤리위원회운영규정

2018. 7. 11. 제정 (제145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법인 정관 제4조 1항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 협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6인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간행부장)과 학술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 협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위원을 각 1인씩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외부)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개회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본 협회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⑥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 및 증원이 생겼을 때 취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및 다른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업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①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언급된 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의 장이나 회장에게 이를 제보하도록 한다.

② 제보의 방법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익명을 통한 제보도 접수하여야 한다.

③ 기명으로 접수된 경우 접수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접수하여 처리한다.

1.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부정행위 조사의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출판윤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하며, 신고 접수일 또는 부정행위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⑤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출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조사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보고토록 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⑧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 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조사자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관) ① 협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단,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징계) ①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본 협회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윤리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해당사안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지에 1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2. 연구 윤리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본 학회지에의 투고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이외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의 관계기관에 위반내용에 대해 통보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는 본 협회 “여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8. 7. 11 (제145호))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